

제10조 (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1996. 6.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및 제안자 : 1996년 5월 2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6년 5월 30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42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상정 및 심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상정 및 심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및 예산안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 가. 제안이유
 - '95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처리
 - 세입(세의수입, 보조금) 증가

나. 주요골자

○ 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예 산 액	추 경 (증 △ 감)	증 감 율 (%)
총 계		135,466,531	125,379,612	10,086,919	8.1
일 반 회 계		111,002,739	103,806,530	7,196,209	6.9
특 별 회 계	소 계	24,463,792	21,573,082	2,890,710	13.4
	의료보호기금	913,748	900,716	13,032	0.1
	새마을소득지원	210,818	210,818	0	
	주 차 장	23,339,226	20,461,548	2,877,678	14.1

○ 주요재원

· 일 반 회 계	-----	7,196,209 천원
세외수입	-----	7,159,198 천원
보 조 금	-----	37,011 천원
· 특 별 회 계	-----	2,890,710 천원
의료보호기금이월금	-----	13,032 천원
주차장 이월금	-----	2,877,678 천원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專門委員: 허영훈, 유재한)

가. 운영위원회소관

○ 의회소관 예산중 추가로 경정된 예산액은 경상예산에 600만 7,000원이 계상되고 사업 예산에 24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총 843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나 경상예산중 정수기 구입비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것은 '9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것이 아닌가 사료됨.

나. 행정재무위원회소관

○ 3실 및 총무국소관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 3,588만원과 사업예산에 1억 1,131만

원, 예비비 7,973만 1,000원등 총 6억 2,692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중 구정종합정보센터 설치예산의 삭감은 사업계획 수립시 기초적인 타당성 조차도 검토되지 않았던 결과라 생각되며, 필립, 현상액 등 필수적인 부대경비를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구한다는 것은 본 사업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지며,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한 사업계획 내용이 없어 예산편성기준이 모호한 점이 있다고 사료됨

○ 재무국소관 예산은 총 1억 3,086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이 7,611만 4,000원이며 자체 사업 예산은 3,874만원이 편성되었고, 반환금 1,601만원은 '95년도 국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이 편성요구된 것이며 경정 삭감된 5,351만 9,000원은 지적과의 지적(임야)도 정비사업예산으로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사업계획이 수립되었다고는 하나 당초의 사업에 의하여 사업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면 내무부와 서울시의 일관성없는 업무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를 것이 아니라 이미 투자한 1억 156만 4,000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서도 사업계획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 시민보사위원회소관

○ 시민생활국소관 경정 예산액은 47억 9,141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부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되어져야 할것이 누락된 것이나, 또 당연히 사업의 마무리를 하는데 따른 비용이 부대비에 기 산출되거나,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도 당초 대상이 결정되었으면 인원만큼 취로 사업비를 편성했어야 하는데 대상 인원보다 적게 편성하였다가 추경에 반영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사료되며, 수도권 매립지 2단계 조성비 부담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생활환경과 추경예산은 시민국 전체 추경예산의 9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 입지 조사 용역비는 후보지 선정및 입지여건 적정성을 조사하는 것으로써 과다예산 편성이 아닌가 생각되며 특별회계부분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운영 전년도 이월금 1,303만 2천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조금 반환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된 것이며 기타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보건소 소관 경정예산은 세입분야 3,705만원이며, 세출은 5,695만 6,000원이며 이 중 자율방역반 운영보상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사회진흥과에서 각 동의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절기 방역사업의 일환으로 발대식을 갖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으며, '96 본 예산에 사회진흥과에서 민간이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추경된 예산 보상금은 삭감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

○ 도시정비국소관 경정예산은 일반회계 4억 3,151만 6,000원과 특별회계 28억 7,767만 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중 교통행정,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이 가장많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차량통행이 많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점 및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시설비를 투자하므로 차량소통개선과 사고 미연방지 및 민원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됨

○ 건설국소관 추경예산은 시설투자비로 29억 7,694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나 토목과와 치수과의 경정예산을 제외한 순수요청예산액은 13억 8,658만 2,000원으로 추경예산에 신규사업을 요청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사업추진은 지역여건을 충분히 감안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아니하면서 사업의 효과를 얻을수 있

을 것으로 보아지며,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업의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당초예산에 책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며, 또한 도로건설 투자사업비를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보다는 집중투자방식에 의한 사업을 하므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질감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修正案 要旨

가. 조정규모 총괄

(단위:천 원)

구 분	예산액	추 경 (증 감)	수 정 액				수정 예산액
			세 입		세 출		
			감	증	감	증	
총 계	135,466,531	10,086,919	-	-	63,038	63,038	135,466,531
일반회계	111,002,739	7,196,209	-	-	63,038	63,038	111,002,739
특별회계	24,463,792	2,890,710	-	-	-	-	24,463,792

나. 회계별 수정 내역

○ 일반회계

(단위:천 원)

항	목	수 정 액		수 정 내 역	비고
		삭 감	증 액		
계		63,038	63,038		
공보관리	일반업무추진비	13,000		민선자치1주년음악회 13,000,000원 전액삭감	84P
내무행정	관서당경비	16,250		직원의식및행태개선교육비중 16,250,000원 삭감	87P
보 건	보상금	13,440		주민자율방역반운영 13,440,000원 전액삭감	98P
건설관리	시설비	10,000		영등포주변추리거리조성에서 10,000,000원 삭감	125P

교통행정	시설비	10,348		도로안전시설물(당산2동 삼성APT~당산중학)에서 10,348,000원 전액삭감	127P
내무행정	일반운영비(입차료)		8,000	직원가족귀성버스운영 (왕복요금) 8,000,000원 신설증액	87P
환경관리	민간자본이전		40,038	관내하수도추가공사에 40,038,000원 증액	107P
건설관리	시설비		15,000	신길3동 253의 9-329의 21칸 도로개설에15,000,000원 신설 증액	124P

※ 기타부분은 구청제출 원안대로 의결

5. 審 査 結 果 : 수정안 의 결

'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64
----------	----

제출년월일 : 1996. 5. 28.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 '95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처리
- 세입(세의수입, 보조금) 증가

2. 주요골자

○ 예산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예산액	추경 (증△감)	증감율 (%)	
총	계	135,466,531	125,379,612	10,086,919	8.1	
일	반 회 계	111,002,739	103,806,530	7,196,209	6.9	
특별 회 계	소	계	24,463,792	21,573,082	2,890,710	13.4
	의료 보호 기금		913,748	900,716	13,032	0.1
	새마을소득지원사업		210,818	210,818	0	
	주차장		23,339,226	20,461,548	2,877,678	14.1

○ 주요재원

· 일반회계	7,196,209	천원
- 세외수입	7,159,198	천원
- 보조금	37,011	천원
· 특별회계	2,890,710	천원
- 의료보호기금 이월금	13,032	천원
- 주차장 이월금	2,877,678	천원

일본국지방의회의원에 대한훈장수여건의(안)

의안 번호	70
----------	----

발의년월일 : 1996. 6. 15.

발 의 자 : 최수영 의원의외 9명

1. 주 문

일본국내 재일교포의 지방참정권 부여에 대하여 지방의회중 최초로 결의한 오사카부(大阪府) 기시와다시의회(岸和田市議會) 의원중 공헌이 많은 의원에게 훈장수여를 해당기관에 건의함.

2. 제안이유

가. 일본 지방의회중 최초로 「定任外國人에 對한 地方參政權 附與決議案」을 의결('93.9.9.) 하여 일본 열도에 파문을 일으켰으며